

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개선

I

목적

-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연구책임자 지원 확대를 통한 연구 경쟁력 향상
- 간접비회계 예산 이월 제한 강화에 따른 이월금 최소화
(산학협력단 권고사항 : 간접비 이월액을 당해연도 예산의 30% 미만으로 유지)

II

지원계획

1. 지원대상

- 공과대학 전임교수로서, 2018년 3월 1일 이후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간접비 납부 연구책임자

2. 지원방안

-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간접비 납부액의 20%

지원사업명	지원금액	비 고
연구자 맞춤형 지원사업	산업시스템 혁신연구소 간접비 납부액의 20%	·간접비 납부액 10% 추가 지원 ·기존 '실험실 운영경비(연구소 간접비 납부액의 10%)'와 통합운영 ·직전년도까지 적립한 액수는 해당연도부터 수시 사용 가능 (예시) 적립기간 : 2018.03.01.~ 2019.02.28. 사용가능 : 2019.03.01.~ 2020.02.07. * 최대 30,000,000까지 적립 가능하며 정년퇴직 7년 전부터 적립 제한 없음

3. 사용방법 및 범위

- 사용 신청일 기준으로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관리과제의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함
- 적립액은 2인 이상 합산하여 사용 가능하며, 동료 교수에게 양도 가능

4. 적립 및 안내

-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28일까지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에 납부한 간접비의 20%
- 매년 3월 초 직전년도 적립액 개별 안내
 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액은 환원하여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대학연구활동지원 경비로 사용함

5. 신청방법

- 신청 시기 : 수시
- 제출서류
 - 사용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

6. 집행방법

- 실비 지급(법인카드 및 계좌이체)을 원칙으로 하며, 「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」 및 「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 집행 기준」에 따라 집행
- 사용 가능 항목

사용 가능 항목	사용 불가 항목
연구개발능률성과급*(적립액의 50% 까지 신청 가능), 기자재구입(범용성 포함_컴퓨터,프린터 등), 기자재 수리비, 소모성물품,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, 학술대회/세미나 개최경비**,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**(체재비,항공료), 연회비, 학회등록비, 종신회비, 논문게재료, 논문교정료,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비, 폐기물처리비, 연구실환경유지 물품구입, 연구실 생수, 회의비, 공공요금, 특허출원등록비	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 (대학원생 인건비 포함), 회의수당 등 「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」 불가 항목

*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분기별로 취합하여 지급

** 국내·외 여비 지급 기준 : 「서울대학교 여비규정」에 따라 지급

7. 신청절차

- 연구책임자별 적립액 안내 → 신청서 접수 → 서류 검토 및 결재 → 지급

8. 담당자

-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김민정 (☎ 5108/carive@snu.ac.kr)

9. 기타

-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에 따른다.